

제3회 참교육실천보고대회 연구보고서
인권교육분과

인권적 학교생활규정의 모델

I 개요

II 본문

1. 학교생활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2.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광주학생생활연구회 가치봄

제3회 참교육실천보고대회 연구보고서
인권교육분과

인권적 학교생활규정의 모델

I 개요

II 본문

1. 학교생활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2.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광주학생생활연구회 가치봄

I. 개요

생활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은 교칙에 의해 일상을 지배받는다. 지난해 6월, 교육부는 국민들의 인권의식 성장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을 발표하고 각급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기존의 교칙을 제·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이 학생 인권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개선된 안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문서상의 제·개정을 하는 시늉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중고등학생연합이 주도한 두발자유화 운동이 학교민주화공동선언 발표, 그 해 10월 교육부의 자율규정권고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또한 2001년 10월, 전국 244개 중고등학교의 교칙과 선도규정을 분석하는 작업이 인권운동사랑방과 전국중고등학생연합에 의해 이루어졌고(“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200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의 비인권적 요소를 지적하여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이와 같이 학교의 인권을 살리고자 하는 시도가 바깥으로부터 계속 있어 왔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정착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결국, 학교 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요구와 내적인 갈망이 없이 성과물처럼 주어지는 외부의 요구로는 학교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동력을 스스로 이끌어내도록 바깥으로부터의 자극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학교생활규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규정은 학교내 학생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받고, 또는 제한받는가를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명시적이고 법적인 문서이다. 대부분 교사 학생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현장에서 인권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자료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의 학교생활을 규정하는 자치법규적 성격의 규정이다. 따라서 규정의 제·개정·실천의 과정은 학교의 자치력을 시험하고 강화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학생들은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배우게 된다.

셋째,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한 학교생활은 기존의 제왕적이며 권위적인 학교의 위계질서에 대항하여 학생들이 유일하게 자신의 인권적 상황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의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학교 내 인권을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란 어떠한가 하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권위와 수직적 인간관계로부터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만남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학생의 인권을, 학교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이다.

II. 본문

여기 실린 글은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을 학생의 인권과 학교자치(또는 학칙의 민주적 제정)라는 두 가지 시각을 기초로 광주학생생활연구회 교육정책분과 가치봄과 YMCA 청소년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지역학생회장단과 공동으로 토론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 또한 하나의 예시안일 뿐이며 아직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¹⁾,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교사들의 바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광주교사 참실보고대회를 기회로 내놓게 된 것이다.

이 규정안이 아직은 인권의 개념이 희박한 학교 현장에서 큰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학교 현장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내놓는 것은, 작은 우리의 노력이 불씨가 되어 교육 주체들이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들불로 번져 나가기를 원하는 바람 때문이다.

1. <학교생활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중학교 생활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중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선도규정' 또는 '학생선도규정'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해왔다. 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단계에서 학생을 비단 선도의 대상으로 또는 잠정적 문제야로 바라보는 시각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그 명칭을 바꾸고자 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생활규정이 학교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 조항만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에 대한 권리와 의무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규정의 내용은 학교생활을 실제로 꾸러가는 교육 3주체의 합의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목적에 명시되어야 한다.

☞ 목적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①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의 배움과 인권실현의 공동

1) "학교생활규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003. 12. 4 YMCA무진관에서 있었다.

제 함양

②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민주시민의 육성 (학생 청소년들이 준법과 법치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 주인의식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을 들 수 있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제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생활규정은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규정이므로, 개인의 삶과 인권에 대한 근거를 소단위의 적용근거로 국한시키지 말고 포괄적인 적용근거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제2장 생활선도협의회

제4조 【생활선도협의회】 ①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②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지도부장, 생활지도부교사(학생/인성지도부교사),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각 학년부장, 학부모대표(학교선택사항) 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지도부장을 간사로 한다.

☞ 선도라는 단어가 학생을 교화·지도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이므로, 학생선도협의회라는 명칭을 학생생활위원회로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 학생 생활에 관한 협의체이므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논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므로 학생생활위원회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3주체의 참여비율을 동등로 한다.

☞ ③항 추가 : 학생생활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학생회 및 학교운영위원의 임기가 1년)

제5조 【기능】 ①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학생생활위원회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 학교생활규정의 실질적인 제, 개정 단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법에서 학교 교칙제정의 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생활위원회가 그 주체가 되기는 교육법상 어렵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의 위임을 받아 학생생활위원회가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의 단위가 되도록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학교생활규정의 올바른 이행을 위하여 모니터링 단위의 역할을 한다.

②생활선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추방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 5조 2항의 기능은 업무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10조의 【폭력예방】 조항에 첨가하여 넣는다.

☞ 5조 2항 학교폭력추방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행한다고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 【기본품행】

제7조 【시설이용 및 환경】

제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제9조 【교우관계】

제10조 【폭력예방】 ①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 현재의 학교 구도에서 학교폭력 예방의 기능을 실지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상담실을 이용한 상담교사의 상담시간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활용 가능)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 재교육 및 전문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적극 고려하도록 한다.

제11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②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성교제를 학교생활규정에 둬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며 개인의 자유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또한 현행 규정은 나열식, 문제 중심의 규정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책임있는 성교육을 통해 바른 성윤리, 생명존중, 양성평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점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청소년기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적절한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제12조 【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동아리 활동은 학생의 자치활동이므로, 학생회에 등록·승인을 받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보장한다. 동아리 등록과 승인의 조건을 제시한다. (예 : 지도교사를 두며, 동아리 활동의 계획과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한다.)

☞ 또한 학생회에 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전담 부서를 두어 자치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3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여가활동을 보장한다.

☞ 여가시간에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서는 남·여학생 휴게실을 둔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학교는 특별실을 적극 개방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 【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3.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엔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학생의 두발은 별도로 정한다.

7.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 4, 5, 6호의 일방적인 규정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학생 스스로가 그들의 규정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학생회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규정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제15조 【학급 내 봉사활동】

제16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담당교사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한다.

☞ 아이들의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1항은 삭제하거나 제한되는 회합의 범위를 지정한다. 예) 교내 결석을 해칠 우려가 있는 회합

제17조 【출결사항】

제19조 【출석사항 평가】

제20조 【결석의 종류】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 학교생활규정의 목적과 취지로 보았을 때, 그 내용이 학교 안으로 범위가 제한되므로 교외 생활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지도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큼. 따라서 제2절 교외생활규정은 삭제를 권고한다.

제22조 【보호자의 의무】

제3절 정보통신

제23조 【사이버 생활】

제24조 【통신기기 관리】

제4절 학생회

제25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 25조와 제 26조 사이에 목적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학생회에서 자치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6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 공정선거관리법 60조와 정당법 6조에 의거 정당가입은 미성년이 할 수 없는 정치행위이므로 상위법에 의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라는 표현의 모호성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확장하여 학교규칙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학생회 회칙에 있으므로 금지 조항의 단서를 달 필요가 없다.

제28조 【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생회가 학생들의 자치기구임을 인정한다면 <【기능】 각 호와 같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1. 학생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 5. 6. 7항의 기능을 첨부하여 넣는다.

5. 학교운영위 안전 상정을 위한 협의
6.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학생생활위원회와 관련된 활동

제29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법상 구성이 강제되는 학운위의 경우도 자문기관에 불과한 상황에서 학생회의 의결된 사항이 학교장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장의 독단을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학생회의 결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장은 학운위와 상의하여 상정된 결의안을 검토한

다> 로 수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치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30조 【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2.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31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부서로 편제하여 학생회 자치활동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문예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선도부를 생활부 또는 생활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학생이 동등한 입장과 자격을 가진 학생을 선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5. 환경부 :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제32조 【직무 및 선출】 ①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을 90% 이상이며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 회장과 부회장의 조건에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내용을 삭제한다. 이는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조건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직책이므로, 출석현황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 출석을 90% 이상인 자 또는 전체 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32조의 4항에 학생회의 선출시기를 명시한다.

제33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대의원, 학급반장 (또는 부반장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이 대의원의 자격으로 대의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는 대의원회의 성원 구성에 위배되는 부분으므로 현실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

- 원칙대로 대의원회가 학급의 대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학급에서의 실질적 집행 및 실천 단위가 실장과 부실장이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급회 조직에서 대의원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대의원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로 수정하고, 학교장의 승인 사항은 삭제한다.

3. 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4조 【집행위원회】 ①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생활지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 생활지도부장 승인을 삭제한다.

제35조 【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결산】 회장은 회계 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많은 학교에서 학생회의 구성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신입생의 경우 학생회장 선출에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 또한 학생회가 학교의 회계 연도에 맞추어 결산을 하거나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리하지 않은 문제들을 안게 된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1) 학생회 선출 시기를 3월로 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2) 3월에 구성된 학생회의 예산 집행을 위해 전년도 학생회의 예산편성시 포괄 사업별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제4장 학생지도 및 상·벌제

제1절 생활지도

제37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 학생 안전사항에 의하여 3종의 보험 문제가 발생하지만,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보험과 공적 보험을 함께 드는 것은 인정된다.

제38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 진로와 진학을 지도할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7. 진학 및 진로지도를 위한 교사를 배치한다> 를 추가한다. 또한 진로와 진학 지도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담 교사로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제39조 【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0조 【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지벌이나 덕벌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체벌을 삭제하고 벌의 종류에서 지벌과 덕벌만 남기도록 권고한다. 체벌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체벌 자체가 갖는 폭력성 뿐 아니라 교육적 성과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없이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체벌은 삭제하도록 한다.

제41조 【체벌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 체벌의 기준이 되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개념이 모호하여 교육계에 혼란과 논란만 부추기는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교육상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모호한 말은 삭제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수정한다.

1. 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체벌을 할 수 없다.
2. 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벌을 줄 수 없다.
3. 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비인격적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4. 교사가 벌 할 때에는 사전 학생에게 체벌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 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 할 수 있다.

제42조 【체벌대상】 체벌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 체벌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으로써 [벌 대상]으로 조의 명칭을 변경한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5. 본교에서 운영하는 벌점규정에 의한 벌점기준 ()점을 초과했을 경우 등

제43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상

제44조 【종류】

제45조 【시기】

제46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제47조 【학력부문】

제48조 【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 과거의 징계 여부 보다 현재의 개선의 모습이 더욱 중요하고 또한 교육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의 제한은 삭제한다.

제49조 【근면부문】

제50조 【특별상】

제51조 【선행상】

제3절 상·벌점제

☞ 체벌을 대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일선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벌점제는 그것의 교육적 성과보다 교사 학생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관계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이 심하다. 상벌점 카드가 애초의 취지대로 준법정신이나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율적인 인격체로서의 학생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음이 많은 학교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 3절 상·벌점제>는 전문을 삭제하도록 권고한다.

제5장 징 계

제58조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3항의 평소 품행>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우려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대체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제59조 【징계의 심의】 ①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생활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①항 생활선도협의회는 '선도'라는 말이 갖는 비교육적인 면 때문에 학생생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 ②항에 <학생생활위원회에 징계 소위원회를 둔다>를 추가한다. 징계 처분은 한 학생의 일생에 중대한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결정과 검증의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생활위원회의 일원인 학생이 학생을 징계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으므로 학생생활위원회(←생활선도협의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징계만을 전담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 <③ 징계소위원회의 구성은 상담교사, 담임교사, 교사대표를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한다>를 추가한다.

☞ <④ 징계소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교사(지역사회 상담가)와 3회 이상 상담을 하도록 한다>를 추가한다. 징계는 단죄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징계이전에 학생 스스로 개선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징계소위원회는 당사자(학생,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를 추가한다.

제60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당사자(학생, 학부모, 학교장)는 징계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생활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로 수정한다.

-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당사자 학생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 18조 학교장의 징계권에 의해 학교장도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받은 학생, 학부모, 학교장 모두에게 징계 재심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61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징계기간은 학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①학교내의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사회봉사 : 6~10일 기간으로 한다.

③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 소속 교육청지침 참고)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퇴학처분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중학생은 '퇴학처분'을 할 수 없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각 학교에서 정한 학칙에 준거, 교사 학생 학부모의 참여로 징계소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에 따른 제·개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④ 퇴학처분>이라는 용어는 의무교육상 의미가 없으므로 선도처분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 <선도처분의 경우 해당교육청이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하여 타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선도학생의 진학을 보장한다> 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선도처분의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해당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법 시행령 제 31조의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62조 【징계의 방법】 ①“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지도부 및 진로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

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제63조 【징계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사들의 업무보조
 - 3. 교재·교구 정비
 -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②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 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64조 【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제 60조 재심의 부의에 의해 학생징계는 징계소위원회에서 정한 징계의 내용을 학생생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처벌을 경감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67조의 내용을 포괄한다.)

제65조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6조 【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7조 【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학생생활위원회는 징계 완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8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69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징계의 기준은 제 61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에 관련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반복되는 조항이므로 제69조는 삭제한다.

제6장 개정방법

제70조 【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2. 09. 09)

1. 학교생활규정(안) 전반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①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②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③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④ 또한, 징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4.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임.
 - ① 교육기본법(제5조)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②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비민주적이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③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5.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하여야 함.
6. 예시안의 '목적'에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것과 달리 전반적 내용은 학생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교사 및 학부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

7. 학교생활규정을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 받는다' 등의 권리중심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①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적 학습 분위기, 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부재 등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해 있음.
 - ②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③ 따라서 예시안에서처럼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로,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권리의 주체로 대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의무, 통합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9. 각급 학교 및 도·농 간 학교에 따라 생활규정을 달리 하여야 함에도 예시안의 규정이 거의 비슷함. 특히, 초등학교생활규정과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은 각 학교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II 학교생활규정(안) 구체적 조항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의 목적

<예시안>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을 규정, 학생들이 21세기 주역으로서 학교·지역사회·국가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

<평가> 유엔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하게 하는데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제2조)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예시안은 어린이·청소년의 이익과 생존·발달을 보장하기보다 사회질서유지에 목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줌. 위의 법이념에 맞고 오늘의 학생인권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생활지도협의회

<예시안>

·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직원으로 구성 · 생활지도협의회의는 직원조회 시 병행 · 구성은 교감, 생활지도부장.. 해당 학년부장(학부모대표 : 학교선택사항)으로 함

<평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한 점과 동 예시안 제2조(목적) 규정에서 그 적용범위를 학생·학부모·교직원으로 하고 있는 점 및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교·가정·사회에서 종합적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생활선도협의회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3. 폭력예방 수립계획

<예시안>

- 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계획을 수립, 별도의 '학교폭력추방위원회' 심의 후 실행 (§9)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치료·가해학생의 치료기관 지정

<평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나 부모의 의무로서 아동에 대한 폭행·폭언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모범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알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것임.

따라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교사·학부모·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폭력예방 교육과정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 인권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바람

4. 여가활동

<예시안>

-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함(18의1)
-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며, 이용규칙 준수(18의 2)
- 특별실 담당학생 두어 관리 및 청소(18의3)
- 생활지도위원 등은 교내 비행발생 지역 수시순찰(18의4)
- 타인의 휴식 방해하는 소란 활동 자제(§18의5)

<평가>

- ①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휴식, 여가, 놀 권리 및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심신과 정서를 성장·발달시키며, 사회성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임.
- ② 법적 근거로는 헌법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등에서 찾을 수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등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 ③ 아동의 발달 및 행복추구를 위하여 휴식, 여가, 놀 권리 및 문화권과 관련된 조항을 학교 생활규정에 담아 학교생활이 즐겁고 보람 있는 삶의 현상이 되길 바람.
- ④ 여가활동과 관련, 학교 측의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의사표현의 자유를 구가하여 능력 배양의 기회가 되는 교지와 학교신문 발행 등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지원을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함.

5. 교내생활규정 중 용의사항

<예시안>

- 가방은 자유로운 것으로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 무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

<평가>

① '학생신분에 맞는'이라는 규정은 표현이 모호하고 그 판단을 학교당국이 독점하게 되는 것임. 또한, 두발상태 불량으로 적시한 무스·젤 등을 사용하여 '두발형태의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라는 규정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자의적 벌점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②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③ 학교 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용의사항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예시하여야 할 것임.

6. 교외생활규정 중 보호자의 의무

<예시안>

- 학생의 올바른 교외생활 지도, 심각한 이상발생 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중·고등예시안§31)

- 학부모·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비행 방지토록 선도 (초등예시안§45)

<평가>

학생을 잠재적 문제아 또는 비행아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임. 따라서 '비행방지토록 선도'라는 규정보다는 '건강한 교외생활을 하도록 유도'라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초등학교예시안의 보호자 책임

<예시안>

- 학생의 교·내외생활로 타인이나 학교에 손해발생 시 보호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 및 도의적 사죄(§49)

<평가>

① 동 규정은 민법 제755조에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임.

② 특히 법과 각종 규정은 윤리·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최소한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기보다 학생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할 것을 규정함이 바람직함.

8. 정보통신

<예시안>

-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 사용, 타인의 인권 존중, 건진정보 제공, 음란·폭력물 접속 금지, 타인 정보보호, 지적 재산권 존중, 정해진 이용시간 준수 등(§31)

-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 교내 첨단기자재 관리 철저(§32)

<평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예절중시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은 필요한 규정이지만, 학생에게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어떻게 실현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9. 학생회

<예시안>

-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음(\$35)
- 학생회의 의결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 발생(\$38)

<평가>

- ① 학생회회원 역시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따라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수 없음'의 규정은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다운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보장이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하는 바,
- ③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0. 금지활동

<예시안>

-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 가입금지, 정치에 관한 활동 금지(\$35)

<평가>

- ① 인간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질서와 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되어서는 안됨. 또한, 학생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임.
- ② 정치란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하여야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임. 학생은 발달과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야 함.
- ③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 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에 그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④ 특히, 선거연령을 낮추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하여 동 규정은 삭제하여야 할 것임.

11. 효력정지

<예시안>

- 학생회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효력이 정지(\$37)

<평가>

- 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996년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심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명분으로 삼아 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를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12. 학생체벌

<예시안>

- 교사의 감정에 치우친 체벌 금지, 체벌기준에 따라야 함
- 교사는 체벌 시 학생에게 사유 인지시켜야 함
- 체벌은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를 동반하여 실시
- 체벌 전 교사의 학생 건강상태 점검의무, 이상 있을 때 연기가능
- 체벌 도구는 지름 1.5cm내외, 길이 60cm이하 나무, 직선형
- 체벌부위는 둔부. 여학생은 대퇴부로 제한
-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 해당 학생에 상해 금지
- 해당 학생은 대체벌 요구 가능, 해당 교사는 학교장 허가 얻어 보호자 내교토록 하여 학생 지도문제 협의(\$54)

<평가>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 7항은 "학교의 장은 ...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음. 법률상 체벌권한은 학교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있는 것임.
- ② 대법원은 체벌을 형법상의 정당행위라는 관점에서,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체벌의 목적·정도·방법·부위를 제시함. 정당한 목적은 훈육·수업진행·교육상 필요·훈계 등을 예로 들었고, 정당한 체벌 정도와 방법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객관성을 지닌 정도와 방법이라고 했으며, 정당한 체벌 부위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지 않을 안전한 신체부위를 말한다고 정의함.
- ③ 그러나, 법적 근거를 떠나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한 치열한 찬반양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는 체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④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어져야 함.
- ⑤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⑥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⑦ 또한, 교육벌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교육벌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13. 현장실습 준수사항

<예시안>

· 현장실습 중 기업체에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하고,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규정. (실업고예시안 §30)

<평가>

- ① 위 규정은 기업체와의 계약서 등에 규정해야 할 내용이며, 학교생활규정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할 것임. 학생에게 현장실습 중 물적 손실에 대한 책임규정을 강조하기 이전에 교사 및 학교당국에게 현장실습대상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분석을 할 것과 실습 중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 ②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안)이 중·고등학교생활규정(안)과 내용이 같고, 다만 위 조항만 달리 규정한 것은 실업교육이 주변부로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방증임. 실업고등학교 교육현장에 알맞게 규정하여야 할 것임.
- ③ 실업고 학생들은 고학력사회 노동경시의 풍조 속에 소외되는 경향이 많으며, 학교를 통해 생존·발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④ 직업교육은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실업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은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면서 성장·발달해야 함.
- ⑤ 특히 실업고에서는 교사와 학생과의 진지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⑥ 또한,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실업고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교육동기를 일깨우고, 희망을 갖고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함.

14. 징계의 방법

<예시안>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함. (§82)

<평가>

- ① 징계의 방법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하도록 명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자원봉사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 ① 따라서 징계의 방식은 징계대상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공공생활에서의 소양 교육 등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15. 개정방법

<예시안>

· 학생회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생활지도협의회 심의 사항(§48)

- 회칙제정 및 개정, 조직 및 편성, 예산·결산·감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회 회칙 개정은 대의원 또는 집행위원 발의, 생활지도협의회 심의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49)

-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교원 발의,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일정 수 교원 찬성으로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얻어야 함(§92)

<평가>

- ①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회의 심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학생회 관련 규정에는 이 사항이 누락되는 등 비체계적임.
- ② 생활지도협의회는 지도기관이 되어 일상적인 지도·지원을 해야 하고, 학생회활동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대표가 참여해야 할 것임.
- ③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특히 학생이 자신들에게 미칠 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견존중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도 존중하여,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각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학교현실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III. 교육부 예시안의 평가기준

○ 유엔아동권리협약

가. 내용

- (1)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됨. 전문은 유엔헌장, 세계인권 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
- (2) 제1부(제1조 내지 제42조)는 아동의 권리와 계약국의 아동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 내지 45조)는 협약의 국제적 실시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 내지 제54조)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평가원칙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① 아동최선이익, ②생존·발달, ③ 차별금지, ④아동의견존중 원칙 및 각 권리보장 여부)

- (1)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그 활동이 어떤 기관에 의해 행해지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규정. 이는 주로 아동의 이익과 부모들의 사생활의 이익 또는 국가당국의 편의 등과 충돌할 때 적용될 수 있음. 최선의 이익이 불확정개념이기는 하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
- (2) 동 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은 생명권을 가지며, 당사국은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것을 규정. 이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성격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임.
- (3) 동 협약 제2조에서 국가는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차별금지원칙을 선언함.
- (4) 동 협약 제12조에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 이는 아동의견존중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함에 있어 아동자신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임.

○ 헌법의 어린이·청소년 권리관련 조항 및 기타 어린이·청소년관련법